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5
----------	-----

201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4. 10. 31.
2.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4. 12. 8.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4.12.10.)
    - 안전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4.12.11.)
    -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14.12.16.)
    - 원안 가결

## Ⅱ .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재금)

### ○ 제안 이유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

첫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임

### ○ 수입과 지출계획

#### - 수입계획은 총 153억 3천 2백만원으로

공제료수입 54억 3백만원

이자수입 2억 3천 9백만원,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지원금 6천만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천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16억 1천 5백만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78억 9천 3백만원임

- 지출계획은 총 153억 3천 2백만원으로  
공제급여지급 78억 5천 5백만원,  
예방홍보사업 9천 9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 16억 1천 5백만원,  
인건비 7억 6천 6백만원,  
업무추진비 3천만원,  
일반운영비 3억 6천 1백만원,  
2015년도 이월금 46억 3백만원임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금은 공제급여의 지급, 공제회의 재정지원,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학교폭력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에 사용하고 있음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2006년 말 150억 9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에는 출연금, 보조금 등 74억 4천만원을 조성하여,  
학교폭력 지원비 16억 1천 6백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07억 2천 9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최종기금 조성액은 32억 8천 9백만원 감소한 46억 4백만원임

###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 □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2015년도말 동기금의 조성액은 46억 400만원이며 2015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하여 2014년도 말 조성 현재액(95억 900만원)보다 △51.6%, △49억 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4-2〉 2015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성현재액	2015년도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	증 감	증감률
		수입	지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9,509	5,824	10,729	4,604	△4,905	△51.6
공 제 기 금	7,893	5,824	9,113	4,604	△3,289	△41.7
폭 력	1,616	0	1,616	0	△1,616	△100

- 동 기금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2조1)에 의거 의무적으로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어 공제료를 납부하는 기금으로써

1)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이는 수입계획은 금년도(55억 7,500만원)보다 33.5%(18억 6,5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수입대비 지출계획이 32억 8,900만원 초과할 것으로 계획되는 바, 기금 수입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안이 개발될 필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4-3〉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공제료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공제 급여	학교폭력 지원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2015	7,440	60	1,616	5,404	240	120	10,729	7,690	1,616	1,423	△3,289
2014	5,575	60		4,824	571	120	10,133	6,963	1,616	1,554	△4,558
2013	4,859	60		3,896	731	172	7,512	6,104	70	1,338	△2,653

- 다만, 기금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제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나, 교육부에서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회에서는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IV. 심사결과

###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4. 12. 11.(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3명
  - 위 원 장 : 김제리(환경수자원)
  - 부위원장 : 김정태(도시계획관리), 이복근(보건복지)
  - 위 원 : 이현찬(행정자치), 박양숙(기획경제),  
이정훈(환경수자원), 김창원(문화체육관광),  
김선갑(보건복지), 김동윤(도시안전건설),  
김상훈(교통), 강성언(교육)  
박마루(보건복지), 이혜경(문화체육관광)

####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3.(토) 10:00 ~ 12. 13.(토) 12:00
  - 장 소 : 후생동 4층
  - 참 석 : 예결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6.(화) 15:00 ~ 12. 16.(화) 18:30
- 장 소 : 후생동 4층
- 참 석 : 예결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165
----------	-----

제출년월일 : 2014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



## 나. 2015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영계획

- 수입계획은 15,332,656천원으로
  - 공제료수입 5,403,727천원과
  - 이자수입 239,755천원
  - 교육금고약정에 따른 지원금 60,000천원
  - 수익사업 전입금 120,0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1,615,963천원
  -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7,893,211천원임
  
- 지출계획은 15,332,656천원으로
  - 공제급여지급 7,855,600천원과
  - 예방홍보사업 99,1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1,615,963천원
  - 인건비 766,901천원
  - 업무추진비 30,000천원
  - 일반운영비 361,477천원
  - 2015년도 이월금 4,603,615천원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 제54조

## 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①-②
	계 ①	출연금	보조금	공제 료수입	융자 회수 (이자 포함)	예수 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②	공제 급여	학교 폭 지 원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 금 원리 상환	예수 금 원리 상환	기타 지출	
~2006년 까지	44,468	9,307		23,014			12,147		29,378	25,495		3,883				15,090
2007	2,990	42		2,220			728		3,765	3,180		585				-775
2008	2,988	30		2,191			647	120	3,149	2,511		638				-161
2009	3,947	30		3,201			596	120	3,496	2,809		687				451
2010	4,402	30		3,652			600	120	3,905	3,132		773				497
2011	4,245	30		3,518			577	120	4,709	3,795		914				-464
2012	6,145	30	1,668	3,710			617	120	5,679	4,441	71	1,167				466
2013	4,859	60		3,896			731	172	7,512	6,104	70	1,338				-2,653
2014	5,575	60		4,824			571	120	10,133	6,963	1,616	1,554				-4,558
2015	7,440	60	1,616	5,404			240	120	10,729	7,690	1,616	1,423				-3,289
계	87,059	9,679	3,284	55,630			17,454	1,012	82,455	66,120	3,373	12,962				4,604

\* 2014, 2015년 예산액 기준